

■ 주요 업무 사례 ■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의 통상임금확인청구 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한 사례

[대상판결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6나21134 통상임금확인청구소송]

원고는 A사의 직원으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장기요양을 하고 있고, 장기요양기간 중에 휴업급여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접 평균임금의 70%와 단체협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30%를 수령해 왔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A사가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해 왔다는 이유로 A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이 원고가 수령해야 할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이미 A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임금청구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합니다)을 제기하여 선행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사를 대리하여 통상임금확인청구는 이행의 소로 구할 수 있는 청구를 확인 청구한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과 선행소송과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역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1심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이광선 변호사



하지인 변호사